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월 4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7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관련 [별표1] <공무원근로자 정원표>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일반직과 체육직 사이 ‘일반+체육’ 칸과 ‘1’ 명을 신설하고, 체육직의 ‘26’ 을 ‘25’ 로 변경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